

소지품을 잃어버린 분에게

유실자



유실물에 현금카드, 신용카드, 휴대폰 등이 있을 경우 발행처나 휴대폰회사에 연락하여 이용정지등의 수속을 해주십시오.

경찰

○귀국하실 때에는 귀국후에도 연락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일본국내에 수취대리나 경찰과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의 성명, 연락처도 기입해 주십시오.

노상에서 유실한 경우

발견되는 경우

시설내에서 유실한 경우

시설에 문의

발견되지 않은 경우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 유실신고서의 작성

○유실신고서는 유실자의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유실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실신고서에 기재된 물건의 습득이 있을 시에는 유실자에게 연락드립니다만, 유실신고서에 준하여 조사나 수사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유실자에게 연락

유실물 발견!

경찰에서 물건을 3개월 보관하고 유실자를 찾기위해 공고나 관계기관에의 조회조사등을 실시합니다.
※우산, 의류등은 공고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유실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처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득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수금 (물건 가치의 5%~20%) 등 보관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금에 대해서 경찰은 관여하지 않으오니 습득자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수취 (원칙)

※송부에 의한 수취를 희망하시는 경우, 「물건송부의뢰서」 및 「수령서」를 미리 작성하시고 송료 (전액 자기부담) 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에게의 반환을 희망하시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확인서류를 대리인에게 지참시켜 주십시오.

《落し物をした時の確認事項》

【물건을 분실하셨을 때의 확인사항】

1. 분실됐다고 생각되는 장소가 역, 백화점등의 특정 시설인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분실물 (유실물) 이 보관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2. 분실물 중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핸드폰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발행처나 휴대폰회사에 신속히 연락하시어 각각 이용정지등의 수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나 고양이가 없어진 경우에는 동물애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도부현, 법령지정시등에 있어서 동물을 인수하여 수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사오니 도도부현등의 창구에도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실물신고는 유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실자의 신고 (유실날짜 시간, 장소, 유실물건등) 에 준하여 경찰서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5. 유실물신고에 준하여 조사나 수사를 행하지 않으며, 유실물에 기재된 물건의 습득이 있을 경우에만 유실자에게 연락드립니다.

《遺失届に係る物件が発見された場合》

【유실물 신고서와 관련된 물건이 발견됐을 경우】

1. 경찰에 분실물이 습득되어 왔을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드립니다.
2. 분실물이 일본의 금융기관 발행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일본사업자의 휴대폰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카드의 발행처나 휴대전화 회사가 경찰의 의뢰를 받고 습득물로서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시된 경찰서에 사전에 연락하신 후 접수시간내에 인수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3. 경찰서에 인수하러 가시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찰서가 우편으로 송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 우송에 필요한 비용은 자기부담이 됩니다.
우송에 의한 인수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송부처, 송부방법등을 기재한 물건송부의뢰서 및 분실물의 수령서를 미리 작성하시어 송부에 필요한 송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해 주십시오. 송료에 관해서는 일본국통화 (엔) 만을 취급합니다.
4. 분실물을 주어서 가져오신 분 (습득자) 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수금 (물건가치의 5%에서 20%사이) 및 분실물 보관에 든 비용의 지불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5. 습득자가 자신의 이름 또는 주소를 유실자에게 알리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경찰이 유실자의 성명등을 습득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보수금등의 금액, 지불방법에 관해서는 경찰은 관여하지 않사오니 습득자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帰国後に物件が発見された場合》

【귀국후에 물건이 발견된 경우】

1. 귀국후에 유실물에 관련된 물건이 발견된 경우, 경찰서에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귀국후에도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등을 유실물 신고서에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일본국내에 대리인 수취나 경찰과의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의 연락처등도 기입해 주십시오.

2. 귀국후에 발견된 분실물에 관하여 우송 수취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송부처, 송부 방법등을 기재한 물건송부의뢰서 및 분실물 수령서를 미리 작성하시어 송부에 필요한 송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해 주십시오. 단, 반환송료는 일본국통화 (엔) 만을 취급합니다.

대리인에게 반환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분실물의 수취의탁 여부를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반환될때 신분확인서류와 함께 대리인에게 지참시켜 주십시오.

《遺失届出受理番号について》

【유실물신고 수리번호에 대해서】

본 유실물신고서에 관한 수리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〇〇년〇월〇일 〇〇현경〇〇경찰서 수리번호